

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528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: 2026. 1. 9.

제 출 자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난임부부 격려금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, 격려금을 증액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인근지역과의 복지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 : 안 제2조

(기존)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

(개정) 시술을 받기 위한

나. 난임부부 격려금을 증액하고자 함 : 안 제5조

(기존) 50만 원

(개정) 연 150만 원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제10조

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당초예산 10,000천 편성, 1차 추가경정예산 15,000천원 추가편성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5. 11. 19. ~ 2025. 12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5-1652호, 건강증진과-13974(2025. 11. 18.)호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8087(2025. 11. 17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8087(2025. 11. 17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41307(2025. 11. 11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9716(2025. 12. 15.)호]

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229(2026. 1. 5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”을 “**받기 위한**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50만 원”을 “**연 150만 원**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 발췌

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(법률 제20112호)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

모자보건법(법률 제20879호)

제11조(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지원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, 유산·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: 난임부부 격려금을 증액하고자 함.

나. 관련 조문: 조례안 제5조(난임부부 격려금 지원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(단위: 건)

| 구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 2026년 | 2027년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| 68 | 78 | 83 | 90 | 90 |

나. 추계 결과

(단위: 천원)

| 난임시술 교통비 | 2024년 (7.1. 시행) | 2025년 | 2026년 | 2027년 | 2028년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지원금액 변경 전 | 2,300 | 4,500 | 9,000 | 9,000 | 9,000 |
| 지원금액 변경 | | | 25,000 | 25,000 | 25,000 |

※ 산출기초

- 변경 전 $90\text{건} \times 100,000\text{원} = 9,000\text{천원}$

- 변경 $70\text{건} \times 300,000\text{원(서울·강기도등 의료기관 시술)} + 20\text{건} \times 200,000\text{원(강원도 의료기관 시술)} = 25,000\text{천원}$

다. 재원조달 방안: 해당년도 예산 편성(균비)

※ 2026년 당초예산: 10,000천원

※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 15,000천원 증액

3. 작성자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 건강증진과 김효진 |
| 연락처 | (033) 330 - 4880 |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| | 1차년도 (2026년) | 2차년도 (2027년) | 3차년도 (2028년) | 4차년도 (2029년) | 5차년도 (2030년) | 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세 입 | | 해 | 당 | 없 | 음 | | |
| 세 출 |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125,000 |
| 난임시술 교통비 지원 |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125,000 |
| 재원 조달 |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125,000 |
| 의존 재원 | 소 계 | | | | | | |
| | 보조금 | | | | | | |
| | 지방교부세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자체 수입 | 소 계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125,000 |
| | 지방세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125,000 |
| | 세외수입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지방채 | | | | | | | |
| 기 금 | | | | | | | |
| 공기업 특별회계 | | | | | | | |
| 민간자본 | | | | | | | |
| 해외자본 | | | | | | | |
| 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